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50621]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5.05.29]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5.29] 주소]

[12ROUND]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12라운드 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12라운드 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장지천길3길 3-6, 1층(장지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비공개)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목 차

| I. | 가맹본부의 | 일반 현황 | 1 |
|-------|--------|-------------------------|---|
| п. | 가맹본부의 | 가맹사업 현황 | 4 |
| ш. | 가맹본부와 |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7 |
| IV. | 가맹점사업: | 자의 부담 | 8 |
| ٧. | 영업활동에 | 대한 조건 및 제한1 | 6 |
| VI. | 가맹사업의 |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 | 2 |
| VII. | 가맹본부의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 4 |
| VIII. |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3 | 8 |
| IX. | 가맹본부의 | 직영점 현황 3 | 9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 | 지 | 주 소 | | | | |
|--------------|-------------|-------|-------------------------------|------|-----------------------|-------|-----------|
| | 12ROUND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장지천길3길 3-6, 1층(장지동) | | | | |
| 주식회사 | 법인 설립등기일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 | 선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12라운드 코리아 | 2024.03.05. | | 2024.04.05. | 나정현 | 경기 丘 MENDOX | (비공개) | - |
| | 법인등록번호 | 13481 | 1-0788630 | 사업자등 | 록번호 | 544- | -87-03148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해당없음 | - | _ | 대표자 - |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ㆍ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12ROUND | |
| 상 호 | 12ROUND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12ROUND FAMILY GYM | I-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
| 광 고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_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년 | 19,650,797 | 4,266,132 | 15,384,665 | 79,596,150 | 6,013,190 | 5,384,665 |

▶당사는 2024년 3월 5일에 설립하였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전년역구 | 이금 | 연 석귀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가맹사업 | 나정현 | 대표이사 | 909409 - 처케 | 주식회사 | 기업 총괄 | |
| 관련 임원 | 다정원 | 네효의사 | 2024.03. ~ 현재 | 12라운드코리아 대표 | 기십 궁길 | |
| 가맹사업 | 아호되 | 사내이사 | 000400 처케 | 주식회사 | 서미 초교 | |
| 관련 임원 | 양훈회 | ^F네이^F | 2024.03. ~ 현재 | 12라운드코리아 이사 | 업무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x] 7-j | 임원~ | 수(명) | 기이스(대)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명) | |
| 2024년 12월 31일 | 2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 출원번호 및 | 소유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여부(일자) | 등록번호 | (등록신청자) | (가맹본부의 |

| | | | | | 사용기간) |
|---------|-----------|---------------------|------------------------------------|------------|-------|
| 12ROUND | 가맹점 운영 | 출원일자 2024.07.10. | 출원번호 4020240126075 등록번호 - | 나정현 양훈회 | _ |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출원중이라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4월 5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식회사 | 12ROUND | 나정현 | 예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장지천3길 |
| 12라운드코리아 | IZNOUND | 478 2 | 9178 | 3-6, 1층(장지동) |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1.0DOLIND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12ROUND | 기타 교육 | 실내체육(크로스핏) |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714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_ | _ | - | _ | _ | _ | 1 | _ | 1 |
|----|---|---|---|---|---|---|---|---|---|
| 서울 | _ | _ | _ | _ | _ | - | _ | _ | - |
| 부산 | - | - | - | - | - | - | - | - | _ |
| 대구 | _ | _ | - | _ | _ | - | _ | _ | 1 |
| 인천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광주 | _ | _ | - | _ | _ | - | _ | _ | 1 |
| 대전 | _ | _ | - | _ | _ | - | _ | _ | _ |
| 울산 | _ | _ | - | _ | _ | - | _ | _ | - |
| 세종 | _ | _ | - | _ | _ | - | _ | _ | 1 |
| 경기 | _ | _ | _ | _ | _ | - | 1 | _ | 1 |
| 강원 | _ | _ | - | _ | _ | - | _ | _ | - |
| 충북 | _ | _ | _ | _ | _ | - | _ | _ | - |
| 충남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전북 | _ | _ | - | _ | _ | - | _ | _ | 1 |
| 전남 | - | - | - | - | - | - | - | - | _ |
| 경북 | _ | _ | _ | _ | _ | _ | _ | _ | 1 |
| 경남 | - | - | - | - | - | - | - | - | _ |
| 제주 | _ | _ | _ | _ | _ | - | - | _ | - |

5. 바로 전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2 | 0 | 0 | 0 | 0 | 0 | 0 |
| 2023 | 0 | 0 | 0 | 0 | 0 | 0 |
| 2024 | 0 | 0 | 0 | 0 | 0 | 0 |

6. [12ROUND]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전 | 년도 가맹 | 점사업자의 | 연간 평균 | ' 매출액 | | | |
|--------|------|--------------|---------------------------|----------------------------|---------------------------|-------|------------------------------|-------|----|
| -zì 6d | 전년도말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비고 |
| 지역 | 가맹점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 전체 | _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 서울 | _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 부산 | _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 대구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 인천 | -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광주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대전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울산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세종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경기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강원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충북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충남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전북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전남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경북 | _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경남 | -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제주 | - | 해당없음 | | | 5곳 미만 |

※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해당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화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11,000 | 계약체결 시 | 가맹점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으로 오픈 이후 반환 불가 | |
| 교육비 | 3,300 | 계약체결 시 |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으로 교육 이후 반환 불가 | |
| 총계 | 14,300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금전)계약이행 보증금 | 5,000 | 계약체결 시 | 가맹계약 미이행,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된 때에는 가맹계 약상의 이행 및 채 무 또는 손해배상 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 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 하가 계약종료 후 의 조치사항을 이 행한 후 상환합니 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9,300 |
| 가맹비 | 11,000 |
| 교육비 | 3,300 |
| (현금)계약이행보증금 | 5,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_ | 70,620 | _ | _ | 1 | 148.5㎡ (45평 기준) 매장상황 및 가맹점사업자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 인테리어 (내장공사) | | 39,600 | 880 | _ | 당사의 | |
| 간판 및 사인물 | | 3,300 | _ | _ | 귀책사유가 | |
| 초도물품 및 거래품목 (기구팩 장비 및 집기) | 별지 참조 | 27,500 | - | - |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 |
| 플랫폼 이용료 (POS) | | 220 | _ | _ | 반완설 누 없음 | 예약시스템 이용료 월별 금액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 추가 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후드 공사,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 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 파사드, 외장 공사, 인허가, 키오스크, 입출입 잠금장치, CCTV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 중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하는 경우 3.3㎡ 당 ₩300,000(부가세 별도)의 검수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장 면적의 증감에 따라 검수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느냐 등을 검수하며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1,100 | 매월 10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 미반환 | 후불로 반환 안됨 | - |
| 광고/판촉 분담금 | | 발동에 대한 조 ² 본부와 가맹점 | 건 및 제한 9. | | | - |
| 개점 후 교육비 | | ·훈련에 대한 / 2. 교육·훈련의 | | | 요 내용, | _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 협의 | - | _ | _ | 경영방침, 유행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 보수 | _ | _ | _ | _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_ | _ | _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
| 플랫폼 사용료 | _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_ | _ | _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 한 지연이자 성 | | 로열티, 상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

| 다 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지연이자 | 격 | 경과했을 시 부담 |
|------------------------------------|---|--------------|
| 시연이사 가산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4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해당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플랫폼,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수시 | 문의: 가맹관리팀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 가맹관리팀 |
| 운영관리 | 해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 가맹관리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잔여 채무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때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금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및 가맹본부의 모든 영업비밀 관련 자료나 매뉴얼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가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체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人山 | 품목(단위) | 공급가격 | | 구브 | |
|----------|----------------|------|----|----|--|
| 순번 품목(단위 | 중국(인커 <i>)</i> | 상한 | 하한 | 十七 | |
| 1 | 해당없음 | | | 당사 | |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 경제적 이익의 | 비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내용 | |
|------|--------------|----|-------------|
| 해당없음 | | | 2024년 기준 |
| 해당없음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2024년 기준 |

2)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 2024년 기준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별첨[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치 타가맹 ^조 |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별첨[판매상품리스트] | |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 2025.4월 기준 |
| 참조 | | | 2020.年 包 7 [也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u> </u>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크로스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 12ROUND | 해당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소재지로부터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영업지역으로 한다. 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몿 및 병원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 및 공항의 시설을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해마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 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해당없음 | | | 다름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해당없음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Ę | 국내 온라인·오프라 | 인 판매 매출액 비증 | <u>z</u>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0% | 10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 2024 | 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12ROUND]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 |
|----|--|---|
| |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_ |
| E.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
| 아니한 경우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
| 못한 경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 |
| 키지 않은 경우 |
|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 |
| 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비,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영업상 비밀보호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상태나 조리를 청결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요청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

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 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 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의 경우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 문의: 가맹관리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2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 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 가맹점사업자가 | |

| | |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계약종료 후 6개월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당사와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크로스핏 교육)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문의: 가맹관리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 | 필수 아님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 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점포 관리 Q.S.C. |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 회계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11 | 하그 서거 | 부딤 | } 비율 | 비디 자리 | ul – | |
|------|---|--------------------|-----------------|--|---|--|
| 구분 | 광고 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비고 | |
| 광고 | 브랜드 및 상품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 라라 달라짐 . 공고)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 계획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판촉 | 행시 | 사에 따라 달 (별도 공고) |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 |

|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 계약서 |
|--------------------------------------|------|
| 제52조 (손해배상) | ગ=૦→ |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 | 제52조 |

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삼천만원 (\{\text{\psi}\}3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단,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X 10% X 12개월 (단, 12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③ 아래 내용을 위반한 상대방은 제1항과 제2항과 별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과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금 일천만 원(₩10,000,000)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무단 사용 시 위반일수 X 금 일십만원
 (₩100.000) 지급
 - 3.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자체가공 등 상품(필수품목이나 강제품목 해당)품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위반 건당 금 일백만원 (₩1,000,000) 지급
-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의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

-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_ | 58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58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57~50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IV. 가맹점사업자의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49~42 | 부담, 1. 영업개시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42 | 이전의 부담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 상보험계약 체결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D-41(1일) | 참조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40~37(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7~25(12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고 |
|---|--|---|---|--|----|
| ○점포의 인테리후 정비, 등의 객인 이 보관정 이 보고 이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 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매의 본부의 사유로 제약이 해지· 영업양도 경우 가맹본부 잔여 기간에 부담액 하는 지급하지 아니 하는 지급하지 아미 지급한 | |

| 점포환경개선 | |
|-----------|--|
| 이 끝난 날부 | |
| 터 90일 이내 | |
| 에 가맹본부 | |
| 부담액을 지 | |
| 급 | |
| <분할지급 시 | |
| 절차> | |
| ○ 가맹점사업자 | |
| 의 비용 청구 | |
| (공사계약서 | |
| 등 공사비용 | |
| 을 증빙할 수 | |
| 있는 서류 첨 | |
| 부) → 3차에 | |
| | |
| | |
| 부 부담액을 | |
| 분할 지급 | |
| (1차 : 청구일 | |
| 로부터 90일 | |
| 이내, 총 부담 | |
| 액의 30%, 2 | |
| 차 : 1차 지 | |
| 급일로부터 | |
| 6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 |
| 30%, 3차 : | |
| 2차 지급일로 | |
| 부터 60일 이 | |
| 내, 총 부담액 | |
| 의 40%) | |
| - 1 10/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개점행사비 | 해당없음 | | | | |
| 판촉장려금 | 해당없음 | | | | |
| 판촉지원 | 해당없음 | | | | |
| 판매용 집기 | ગોનોબે ૦ | | | | |
| 무상대여 | 해당없음 | | | | |

| 반품지원 | 해당없음 | | |
|------|------|--|--|
| 마일리지 | 해당없음 | | |
| CRM | 해당없음 | | |
| 테스터 | 해당없음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가맹관리팀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동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문의: 가맹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신용명 또는 내용 | 신용제공자 | 금액 | 신용 형태 | 신용제공 조건 |
|-----------|-------|----|-------|---------|
| 해당 없음 | | |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 이론, 실습교육 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 필수 교육 |
| 수시 교육 | 서비스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기타 필요한 교육 등 | 이론, 실습교육 집단 강의 | 별도 통지 | 필요 시 실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5일 | 3,3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 | 신 교육 출시, 요청시, |
| 특별 교육 | 별도 계획 | 별도 책정 | 일정자격 미달시 등 |
| 재교육 | | |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경기 | 12ROUND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장지천3길 3-6, 1층(장지동)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최초 영업 |
| | 개시일부터 직전 |
| | 사업 연도 |
| | 말까지 의 모든 |
| | 영업일을 합산한 |
| | 후 직전 |
| 9개월 | 사업연도 말 기준 |
| | 운영중인 |
| | 직영점의 수로 |
| | 나눔. 이렇게 |
| | 계산된 일수를 |
| | 연/월 단위로 |
| | 변환하여 기재함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당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
| |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근거로 |
| | 기재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을 진행하여 |
| 96,200 |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매출액입니다. |
| | 2024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
| | 환산하였으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79,596,150원 x 365일 ÷ 302일 |

[별첨]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거래상대방 강제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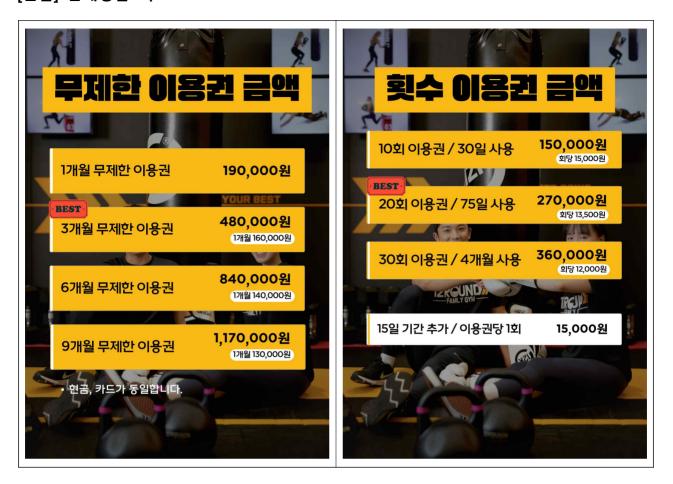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거래상대방 권장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